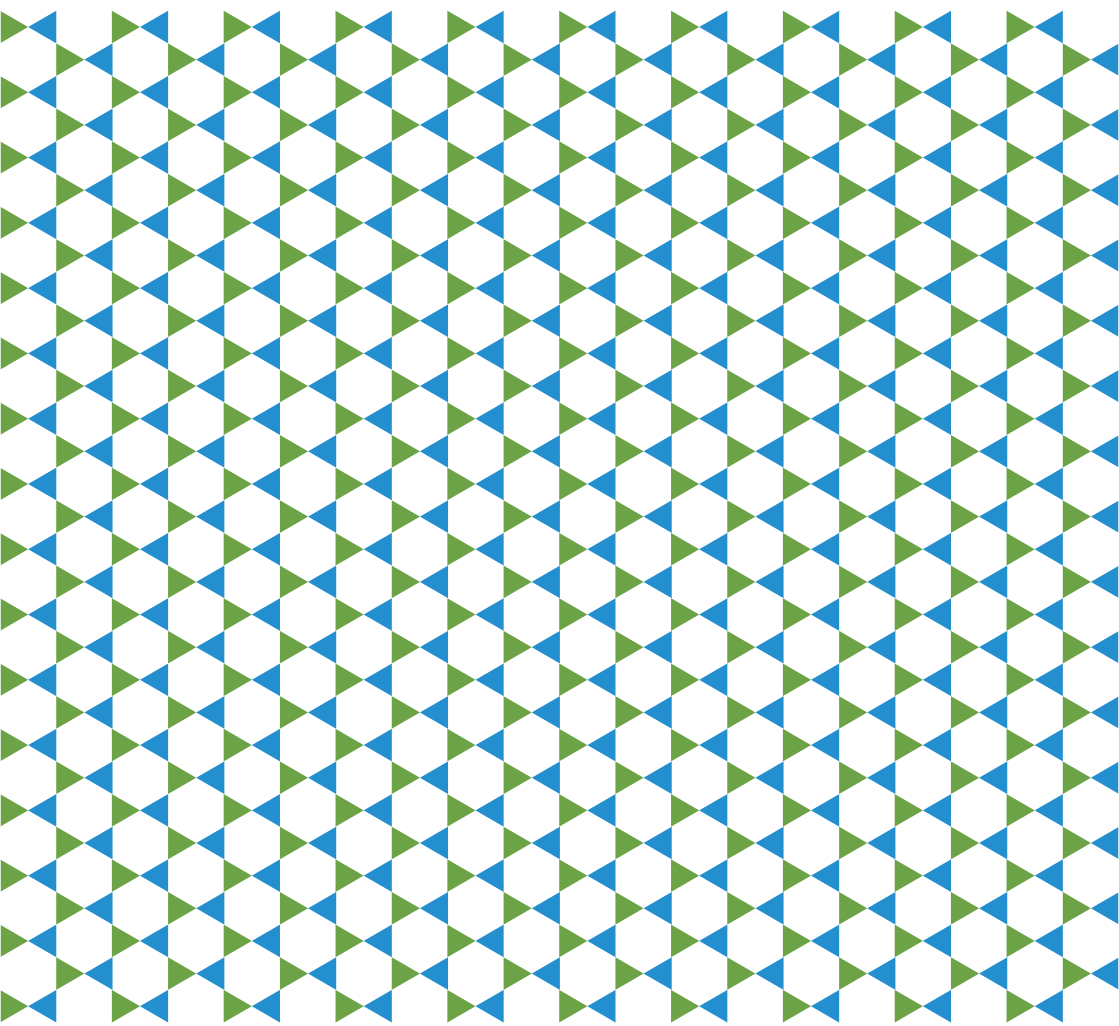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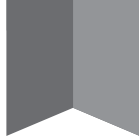


성민복지용어사전

시대변화와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한
새로운 복지용어 제안서





성민복지용어사전 목차

서문 _ 05

용어사전 ... 가치지향 용어

- 1. 권리복지 _ 11
- 2. 공명 _ 12
- 3. 주권의 일의성 _ 12

... 문제제기 용어

- 1. 관리 _ 13
- 2. 개입 _ 13
- 3. 독거노인 · 홀몸노인 _ 14
- 4. 사례관리 _ 14
- 5. 서비스 _ 15
- 6. 성인기능교실 _ 15
- 7. 수혜자 _ 16
- 8. 이용자 _ 16
- 9. 저소득층 · 취약계층 _ 17
- 10. 주민조직화 _ 17
- 11. 중간관리자 _ 18
- 12. 프로그램 _ 18

... 대체하는 용어

- 1. 교육문화사업 _ 19
- 2. 사업 _ 19

- 3. 1인 가구 어르신 _ 19
- 4. 주민 _ 20
- 5. 주민협력 _ 20
- 6. 중간리더 _ 20
- 7. 주민권리보장사업 _ 20

... 용어설명문

- 1. 관리 _ 21
- 2. 개입 _ 24
- 3. 독거노인 · 홀몸노인 _ 27
- 4. 사례관리 _ 30
- 5. 서비스 _ 36
- 6. 성인기능교실 _ 39
- 7. 수혜자 _ 43
- 8. 이용자 _ 46
- 9. 저소득층 · 취약계층 _ 50
- 10. 주민조직화 _ 55
- 11. 중간관리자 _ 60
- 12. 프로그램 _ 63

부록

- 1.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인권지침 _ 69
- 2. 대한민국 헌법(제1장~제2장) _ 80
- 3. 세계인권선언문 _ 90
- 4. UN 아동권리협약 _ 98
- 5. 장애인인권선언 _ 121
- 6. UN노인원칙 _ 124
- 7. 사회복지사윤리강령 _ 126

성민복지용어사전을 발간하며...

‘언어는 인권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비전공명프로젝트¹⁾」라는 이름으로 총 10회 전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여 기관의 미션·비전과 팀별 전략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2017년에는 총 3회의 「비전전략워크숍²⁾」을 통해 전년에 수립했던 팀별 전략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의 본질(本質)적인 의미와 가치’라는 철학적이고도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본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이었으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다 ‘주권적 주체로서의 주민(主民: 주인 된 자)’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욕구에 기반한 ‘욕구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에 기반하고, 욕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인 된 자들의 마땅한 권리로서의 복지로 다시 한 번 자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찰과 학습의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주권적 주체’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에 붙여진 이름과 사용하는 복지 용어에서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는 이미 꽤나 회자되어온 ‘사례관리’라는 용어입니다.

원어는 'Case Management'로 번역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경영적 관점이 담긴 단어의 선택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주권적 주체의 삶'을 돌보아야 할 '사례'로 전락시키고, 인간을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호 평등하다면 누가 누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번역어일 수록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인간 존엄과 평등이라는 사회복지 지향가치와 무관하게 위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인 단어라고 인식한 것들을 찾아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대체어를 제안하여 「성민복지용어사전 Ver.1³⁾」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정확한 단어사용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자, '인권' 그 자체이며, '생각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전발간과 취지에 있어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롭게 복지용어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모든 사회복지 용어와 그 사용을 부정하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실천까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인권적 관점으로 고민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옳은 실천이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약속인 언어(단어)를 우리만 암호처럼 폐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

만,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재가복지'를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듯이, 시대변화와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여 기존의 전문용어를 새롭게 고쳐 쓰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주권적 주체와 인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내놓은 새로운 제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민복지용어사전 Ver.1」은 가치지향용어, 문제제기용어, 대체하는 용어, 용어설명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민 직원들이 정의한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를 <가치지향 용어>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제기가 된 많은 용어들 중에서 사용의 빈도수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12개 단어를 <문제제기 용어>로 분류하고, '기존 정의'와 '문제제기 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대체할 용어가 공명되었을 경우 대체어를 제안하였으며, 공명한 대체어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체하는 용어>는 문제제기 용어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어 7개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설명문>은 문제제기한 12개 단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였는데, 1)현재 활용(역사적 맥락, 학문적 근거, 다양한 사전적 정의, 사용의 예시 등 포함) 2) 문제제기, 3)우리가 담고자 하는 지향, 4)합의 결과와 사용 예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제기용어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배경적 내용을 모아놓은 설명문입니다. 마지막 <부록>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민복지용어사전의 사용방법은, '가치지향 용어'를 우선 일독한 후, '문제제기 용어'를 중심으로 연결된 '대체용어'와 필요한 '용어 설명문'을 교차로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인권과 인권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족과 동료, 만나는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언행은 없었는지 늘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더 높은 인권감수성과 기준이 요구되기에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단어 사용 하나에서부터 세심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제안이 다 함께 더 좋은 복지세상을 만드는데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공동저자 씀



용·어·사·전

1. 가치지향 용어
2. 문제제기 용어
3. 대체하는 용어
4. 용어설명문

1), 2), 3) 모든 과정에 양세진 대표(SIG, 소셜이노베이션그룹)께서 진행자와 공동저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용·어·사·전 { 가치지향 용어 }

1 권리복지

정의 :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기반하여 주권적 주체로 존재하게 하는 복지 실천을 말한다.

의미 : ‘욕구복지’는 주민의 욕구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 정의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원을 연계해주는 것으로 주권적 주체인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해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민은 욕구에 기반한 복지를 넘어 그 이면에 잠재된 권리문제를 확인하여 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 선택하도록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권리복지를 추구한다.

예) 복지는 본질적으로 욕구에 기반한다.

→ 복지는 본질적으로 권리에 기반한다.

2 공명(共鳴, resonance)

정의 : 가치 있는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하고, 전면적으로 자기화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른다.

의미 : 공명은 같은 의견이라는 ‘동의(同意)’ 개념이나 ‘합의(合意)’처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나 타협에 의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을 넘어서, 뜻과 마음과 느낌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민의 모든 복지실천과 의사결정은 공명을 지향한다.

예) 현재 기관에서 근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 내가 기관을 위해 존재하고, 기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이 공명의 경험이다.

3 주권의 일의(一意)성

정의 : 일의성이란 언제, 어떠한 장소에 제한 없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즉, 주민(主民)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주권적 주체임을 말한다.

의미 : 성민의 모든 복지실천에 있어서 주민은 거주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주체로서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주민(主民)이다.

예) 취약계층·수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권의 일의성에 의하여 주민이 주권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용·어·사·전 문제제기 용어

1 관리

정의 :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문제제기 : ‘관리’라는 용어는 주권적 주체인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성민에서는 ‘관리’라는 용어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물 및 체계에만 사용한다.

※ 용어설명문 p.21~23 참고

2 개입

정의 : 사건, 기획활동 또는 개인의 내적 갈등 사이에 관여하는 것이다.

문제제기 : 성민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개입’이라는 용어가 주민의 주체적인 결정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로서 활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의 주도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에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맥락에 맞는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24~26 참고

3 독거노인·홀몸노인

정의 : 독거노인·홀몸노인은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가구이다.

문제제기 : 독거노인은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1인 가구 어르신'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27~29 참고

4 사례관리

정의 :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촉진·회복·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이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2)

문제제기 :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하나의 '사례'로 지칭한다는 것과, 사람을 '관리'한다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기존 사례관리가 담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권리 보장사업'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30~35 참고

5 서비스

정의 :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든다는 의미이다.

문제제기 : 성민은 '서비스'라는 용어가 접대나 시중을 든다는 의미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민이 지향하는 권리복지실천과 맞지 않아 맥락에 맞는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36~38 참고

6 성인기능교실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서비스제공기능 중 교육문화사업의 하위사업인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 사업을 총칭한다.

문제제기 : 성민은 성인기능교실에서 '기능'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도구화하는 사업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교육문화사업'으로 통칭한다.

※ 용어설명문 p.39~42 참고

7 수혜자

정의 : 혜택(은혜와 덕택)을 받는 사람

문제제기 : 수혜자라는 용어는 제공자와 수혜 받는 사람과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 삶의 주체를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주민(主民)'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43~45 참고

8 이용자

정의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user)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문제제기 : '이용자'라는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를 경제적 행위의 주체로만 한정하는 위험이 있어 성민은 이용자를 주권적 주체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主民)'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46~49 참고

9 저소득층·취약계층

정의 :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다.

문제제기 : 취약계층·저소득층은 경제적 관점으로 위계화하여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무시한 채 집단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권적 주체인 '주민(主民)'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50~54 참고

10 주민조직화

정의 :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구현해 나가는 실천과정을 의미한다.

문제제기 : 주민조직화는 주민 스스로 조직화해야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주도성에 의해 주민을 조직해야할 대상으로 볼 위험과 주민의 조직화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주권적 주체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협력(主民協力)'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55~59 참고

11 중간관리자

정의 : 최고 관리자와 현장감독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직능부문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는 관리자로 운영 및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문제제기 : 주권적 주체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직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자 '중간리더'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60~62 참고

12 프로그램

정의 : 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의 계획 및 실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특정한 목적(목표)달성을 위해 규격화되고, 조직화된 여러 활동의 체계이다.

문제제기 : 프로그램은 모든 요소들을 일괄적인 구조로 규격화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며, 갑작스러운 변수나 사회적 변화, 주민들의 변화되는 욕구 등이 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으로 대체한다.

※ 용어설명문 p.63~65 참고

용·어·사·전 { 대체하는 용어 }

1 교육문화사업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서비스제공기능 중 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성인기능교실을 통칭한다.

※ 용어설명문 p.39~42 참고

2 사업

정의 : 주민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전개가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이다.

※ 용어설명문 p.63~65 참고

3 1인 가구 어르신

정의 : 혼자서 살림하는 어르신이다.

※ 용어설명문 p.27~29 참고

4 주민(主民)

정의 : 지역에 거주한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 내적으로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 주권적 주체이다.

※ 용어설명문 p.46~49 참고

5 주민협력

정의 : 주민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활동에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 용어설명문 p.55~59 참고

6 중간리더

정의 : 기관의 부장, 과장, 팀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주권적 주체인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 용어설명문 p.60~62 참고

7 주민권리보장사업

정의 : 주민이 주권적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 용어설명문 p.30~35 참고

용·어·사·전

용어설명문

1 관리

1. 현재 활용

가) 역사적 맥락⁴⁾

(1) 20세기 초

앙리 파올(Henri Fayol)은 경영자들이 수행해야 할 5대 관리 기능에 대해 역설하였다. 즉 경영자는 계획활동, 조직활동, 명령활동, 조정활동, 통제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시대별 정의⁵⁾

(1) 1950년대

Yoder(1956) : 인적자원관리를 종사자로 하여금 조직에 대하여 최대한 공헌하게 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협력, 지도하는 기능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1980~1990년대

Pigos와 Myers(1981), Spates(1999) : 종사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자신의 직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조직에 대

4) 스티븐로빈스, <조직행동론>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3, p.5

5) 유경하, <사회복지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유형이 종사자의 조직몰입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송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7-18

하여 최대의 공헌을 하도록 잠재적인 능력을 육성,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정의내렸다.

(3) 2000년대

Drucker(2007)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로서, 개인을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의 개성 존중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사자의 인간적 만족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의와 구별되어 진다.

[사전적 정의]

1. 관리(management)

-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사용의 예시]

→ 자살시도자, 자살고위험군, 자살자유가족 추구관리, 전화상담을 통한 증상 및 약물관리,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원관리
→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후원자 발굴, 지속 지원 유지를 위한 생일카드 및 편지발송 등의 관리

2. 문제제기

‘관리’라는 용어는 주권적 주체인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주권적 삶의 주체로서 사람에 대해 관리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하는 주체자의 관점을 담는다.

4. 결과

본 복지관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물 및 체계에만 사용한다.

- 예) • 자원봉사자관리 → 자원봉사사업
• 후원자관리 → 후원사업
• 직원관리 → 조직관리(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업무는 관리함)

2 개입

1. 현재 활용

사회복지실천학문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의 본질에 관한 초점을 사용하는 것과 적당한 개입전략에 관한 결정을 안내하는 것을 역할이론으로부터 개념을 가져왔다. Connaway와 Gentry(1988)는 사회복지실천은 "개입 역할들의 배열"이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조직화된 실천의 구조로 사용한다.

개입역할은 실천가가 특정한 행동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돕는다. 개입역할은 보편적으로 정의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일할 수 있게 한다. 이 역할은 개인들, 가족들, 집단들, 지역사회들과 실천에서 이행된다.

개입역할 이행으로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족, 기관, 동료, 다른 지역 기관의 일원과 같은 외적체계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Compton & Galaway(1994)는 개입역할을 5가지로 규정한다. 중개자(broker), 가능케 하는자(enabler), 교사(teacher), 옹호자(advocate), 중재자(mediator) 각각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목적에 따라 다르다.

다섯 가지 역할 모두는 개별사회사업부터 지역복지실천 까지 어떤 크기의 클라이언트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이 역할들은 1차적 개입수준부터 3차적 개입수준까지 어떤 실천에서도 이행될 수 있다.⁶⁾

6) 차소영, <노인복지실천의 개입방법과 사례>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7, p.34-35

[사전적 정의]⁷⁾

1. 개입

① 집단 사건, 기획활동 또는 개인의 내적 갈등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사업에서 개입이란 의사의 '치료'라는 말과 유사하다.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개입이 치료를 포함하고, 또 사회사업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또는 사회 개선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활동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입활동을 선호한다. 그래서 개입은 심리치료(psychotherapy), 옹호(advocacy), 중재(mediation), 사회계획(socialplanning), 지역사회조직(communitry organization), 자원을 조사, 개발하는 것과 많은 다른 활동에 관련된다.

[사용의 예시]

→ 서비스 개입, 사례 개입, 개입 계획, 개입방법,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2. 문제제기

사회복지사의 '개입'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개입이 일어나는 체계의 밖에 존재하는 외부전문가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모든 행동이 개입을 행하는 사람인, 즉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변화를 가져오는 책임이 있는 자는 '개입'을 통해 홀로 행동하는 사회복지사에게

7) [네이버 지식백과] 개입 [intervention]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있다. 그러므로 '개입'이라는 개념은 취약집단 사람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그들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만든다.⁸⁾

'개입'이라는 용어가 주민의 주체적인 결정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전문가로서 활동한다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어 주민의 주도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성민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사회복지사가 주민의 삶에 융화되어 주민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4. 결과

주민의 주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맥락에 맞는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

예) 위기사례에 대해 신속한 개입을 하세요.

→ 위기주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하세요.

8) 짐 아이프,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2001, 278-279

3. 독거노인·홀몸노인

1. 현재 활용

가) 독거노인의 개념정리

(1) 1990년대⁹⁾

① 김미영(1997)

- 광의의 개념 : 65세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노인 혼자서 형성하고 있는 독신노인을 의미

- 협의의 개념 :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가구

② 박영두(1997) :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과 동시에 고독, 빈곤, 가사서비스 원조 및 재가서비스 등의 필요에 대응할 인적자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질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등 부양기능을 제공받지 못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계층

(2) 2000년대¹⁰⁾

① 김기태·박봉길(2000) : 배우자, 자녀, 친척 등 노인 본인 이외에는 전혀 동거인이 없고, 이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노인단독세대

② 송기문(2004) : 절대빈곤상태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보호를

9) 한명숙, <독거노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9

10) 강종관, <독거노인의 정보통신기술기반 복지서비스 수용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26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가구

(3) 2010년대¹¹⁾

① 노재철·고준기(2013) : 노년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능력 부족으로 별거상태인 노인들

[사전적 정의]

1. 독거 노인

①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홀로노인', '홀로 사는 노인', '홀몸노인'으로 순화.

2. 홀몸 노인

① 홀로 살아가는 노인

[사용의 예시]

→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주거나 신체 및 건강, 여가활동,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 1인 가구는 도시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읽히는 반면 독거노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³⁾

11) 강종관, <독거노인의 정보통신기술기반 복지서비스 수용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26

12) 김덕조,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질간의 관계 검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 26

13) <독거노인돌봄유형별지원체계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4, p.28

→ 서울시는 2008년 행정용어 개정사항으로 독거노인이 한자어로 사용자 중심의 용어가 아니므로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통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라는 뜻의 '홀몸노인'이라는 언어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¹⁴⁾

2. 문제제기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는 존엄한 삶의 주체가 아니라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주권적 삶의 주체로서 주민(主民)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수혜자나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라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을 담은 용어를 지향한다.

4. 결과

'가구'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이른다. 1인 가구는 도시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읽히는 반면, 독거노인은 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1인 가구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현상을 담은 용어를 사용한다.

예) 독거노인 식사배달서비스

→ 1인 가구 어르신 도시락배달 사업

14) <독거노인돌봄유형별지원체계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4, p.28

4. 사례관리

1. 현재 활용¹⁵⁾

가) 사례관리의 등장과 발달

(1) 필요성

사례관리는 1960년대 만성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사례관리 등장배경에 대해서 David P. Maxley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자의 시설보호로 인한 비용 억제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70년대 이후 시작된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는 분산되고 단편적인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복합적 욕구가 있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 기관의 단일서비스로는 불충분하게 되어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넷째, 기존 서비스들의 단편성으로 복합적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섯째, 공식적인 지원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체계와 지원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인

15) 김정민, <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사회복지 조직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16, p.8-13

복지 서비스의 비용효과에 대한 인식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김한양, 2006: 권진숙 외, 2009: 박미은, 2015)

(2) 사례관리의 역사적 과정(미국을 중심으로)

① 1800년대

미국의 사례관리는 1863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원조를 하기 위해 설치한 주정부의 자선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Weil & Karls, 1985:박미은, 2015 재인용). 이후 서비스의 중복방지와 자원들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사례관리적 요소가 포함된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1977에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박미은, 2015). 1889년에 시작된 인보관(Settlement House)에서는 헐하우스(Hull House)를 시카고에 설립하여 이 민자와 저소득층 가족의 욕구와 문제들을 목록화하였다.

② 1900년대

1901년 초기 사례관리를 개념화한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박미은, 2015). 1960년대 이후 한동안은 전문영역의 프로그램만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고 단편적인 서비스와 중복적인 서비스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 요청되었다(권진숙 외, 2009).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정책과제로 서비스의 '조정과 통합'에 관심을 두게 된다.(김만두 역, 1993). 1963년 지역사회정신건강법이 제정되면서 탈 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지역사회 내 만성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격적으로 사례관리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미국의 각 주들은 사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고(정순돌, 2005), 1980년대 중반에 사례관리 모델이 널리 퍼졌다(전미애, 2012). 특히 1980

년대 초에는 만성질환으로 장기보호가 필요한 이들(노인의 80%에 해당)에 대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례관리가 포함되었다(정순돌, 2005). 1980년대 이후 사례관리는 부랑인, 에이즈환자,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정순돌, 2005 재인용). 소득, 주거, 직업훈련,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조직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③ 1990년대~2000년대

사례관리 개념이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역할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제공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와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정순돌, 2005:21-22). 이상과 같은 정부정책 차원의 사례관리 발달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고용주 보험, 제3자의 보험 계획 등과 같은 사례관리 모델도 발달하였다.

나) 사례관리의 개념정의

사례관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례관리는 정신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 노인, 노숙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사례관리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현장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리된 표는 다음과 같다.

〈표-1〉 사례관리의 학자별 정의

학자명	정의
Peter Johnson (1983)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를 다양한 서비스 체계에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
Johnson & Rubin (1983)	사례관리 접근의 기본 원칙은 담당 사회복지사인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SW, 1984)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조정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Moxley (1989)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화와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과 활동의 네트워크를 조직·조정·유지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망과 관련된 대인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
Rothman (1991)	지역사회 내의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조언, 상담, 치료를 수행하는 것과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기관 및 비공식적인 체계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에 연계시켜 주는 통합적 실천방법
Baker & Intagliata (1992)	클라이언트 옹호, 서비스 조정, 자원통제, 서비스 구입 등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통해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책임지는 활동
Ballew & Mink (1996)	여러 사람의 원조자로부터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용 가능한 지원망과 이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강조함.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009)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동원하여 연결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
한국사례관리학회 (2012)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사회기능 회복을 위해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사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방법

※ 본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현장에서의 상황에 맞도록 개념화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2)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로 사용한다.

[사전적 정의]

1.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촉진·회복·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방법

2. 사례(case)

- ① 특정한 상황의 경우
- ② 실정, 사실
- ③ 특정한 사람이나 일에 관련된 사례(경우)
- ④ 사건

3. 관리(management)

- ① (사업체·조직의) 경영, 운영, 관리
- ② (사람·상황의) 관리

[사용의 예시]

→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종결

2. 문제제기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함에 있어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하나의 '사례'로 지칭한다는 것과, 사람을 '관리'한다는 용어 자체가 권리복지를 지향하는 성민의 복지실천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체용어가 필요하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기존 사례관리가 담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4. 결과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협력하는 주체자로서 욕구충족을 넘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민권리보장사업'이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예) 사례관리 몇 케이스 하고 계세요?

→ 주민권리보장사업에 몇 명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5. 서비스

1. 현재 활용

가) 서비스제공기능

- ① 주민에게 직접적인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¹⁶⁾
-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제3항 관련[별표3](p.44~p.48 참고) 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한 영역
- ③ 복지서비스제공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내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수행 팀명

나) 사회서비스

- ① 사회서비스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으며 국가마다 상당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
- ② 사회서비스의 개념 정의는 주제, 대상범위 및 분야, 특성 등의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 ③ 광의의 개념 : 사회정책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며 인적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 ④ 협의의 개념 : 사회적 보호, 장애, 질병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 영국의 대인사회서비스와 미국의 인간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 ⑤ 최협의의 개념 : 사회적 돌봄을 의미한다.

1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다) 서비스(행정)¹⁷⁾

행정서비스는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일, 행정공무원제도, 공공봉사, 행정기관의 공공제의 제공 등 다양한 의미로 제공된다. 즉, 행정서비스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욕구와 필요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형·무형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정의]

1. 서비스 (service)

- ①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
- ②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돕.
- ③ 장사에서, 값을 깎아 주거나 덤을 붙여 줌.

2. 사회서비스

- ①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포괄하는 개념

[사용의 예시]

→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담당부서명 : 사회서비스 자원과

17) 신무섭, <삶의 질: 행정서비스(한국사회와 행정서비스)>, 한국학술진흥재단, 1996, p13

2. 문제제기

‘서비스’라는 용어가 접대나 시중을 든다는 의미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성민의 비전(주민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과 미션(주민의 힘을 믿고 지지하며 서로 배우고 어울리는 장을 만들)에도 부합하지 않아 성민의 모든 복지실천을 설명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3. 우리의 지향(답고자 하는 의미)

주민의 주체성을 담아야 하며, 본 복지관은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지향한다.

4. 결과

성민의 모든 복지실천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기에 ‘서비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맥락에 맞게 다른 용어로 사용한다.

예) 복지서비스팀의 식사배달서비스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 복지사업팀은 몇 명의 주민에게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6. 성인기능교실

1. 현재 활용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성인기능교실’은 2017년 10월에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 2제3항 관련)의 서비스제공기능 중 교육문화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로 나뉘어 있다. 이에 교육문화사업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사전적 정의]

1. 성인기능교실¹⁸⁾

①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2. 기능

①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②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

[사용의 예시]

→ 2017년 성인기능 교육문화 프로그램 양식조리교실 개강

→ 언어의 사회적 기능

→ 기능이 다양하다

→ 기능을 축소하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3조의 2제3항), 로앤비, 2017

→ 기능이 강화되다

2. 문제제기

성인기능교실에서 ‘기능’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도구화하는 사업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주민에게 특정역할을 강조하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4. 결과

‘성인기능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육문화사업’으로 통칭한다.

예) 상반기 성인기능교실 이용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상반기 교육문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참조

〈별표3 -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¹⁹⁾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 례 관 리 기 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 족 기 능 강 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 비 스 제 공 기 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 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 역 사 회 보 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 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능	교육 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문화 :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 지원 등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 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p>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p> <p>-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육구조사, 실습지도</p>
	주민 조직화	<p>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p> <p>-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p>
	자원 개발 및 관리	<p>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p> <p>-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p>

1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3조의 2제3항), 로앤비, 2017

7. 수혜자

1. 현재 활용

가) 용어 개념 정리

(1) 1970년대

존 롤스 (1971) : 롤스(Rawls, J.)의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사회에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 특히 정신적 차원에서 지적 능력과 재능이, 육체적 차원에서 신체적 역량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다.

(2) 1980년대

Richard Suaver(1983)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2가지 요소를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혜자라 정의했는데, 이 두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본질이라 했다. 즉 수혜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공급자들이 그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²⁰⁾

[사전적 정의]

1. 수혜자

- ① 혜택(은혜와 덕택)을 받는 사람

20) 정광열,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 공급자와 수혜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37

[사용의 예시]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의 수혜자인 노인에게 적절성 있는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이 있고, 둘째 사회적 여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¹⁾

→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주민, 고객 또는 수혜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다.²²⁾

예) 추석명절 후원품 수혜자 명단작성

→ 추석명절 후원품 수령자 명단작성

2. 문제제기

수혜자라는 용어는 제공자와 수혜 받는 사람과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담고 있기에 주권적 삶의 주체를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활동, 이슈 등에 다양한 주체적, 주권적 존재로서 참여하는 의미를 담는다.

4. 결과

단순히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아닌, 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활동, 이슈 등에 다양한 주체적, 주권적 존재로서 참여하는 의미를 담아 '주민(主民)'으로 대체한다.

21) 김소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9

22) 정광열,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 공급자와 수혜자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38

8. 이용자

1. 현재 활용

가) 접근방법에 따른 개념

(1) 이용자

① 김용득(2005)²³⁾ : ‘서비스이용자(service user)’ 또는 ‘이용자(us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전까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용어는 ‘주민’이었다. ‘이용자’라는 용어는 실천가, 관리자, 교육 분야로 파급되어 갔는데, 이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서울시복지재단(2010)²⁴⁾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user)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은 ‘주민’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서비스이용자(service user)’ 또는 ‘이용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김용득, 김미옥, 2007).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립목적에 의한 주요 서비스 대상자인 일차적 이용자와 함께, 이들의 가족과 보호자 등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이차적 이용자도 이용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소비자(고객)주의

① Pierson and Thomas(2002)²⁵⁾ : 이용자 용어와 관련하여 소비자주의

23) 강혜규 외 4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2010, p.27 재인용

24)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만족도 조사체계 연구>, 2010, p.122~123

25) 강혜규 외 4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2010, p.27 재인용

(consumerism) 접근에서 언급되는 ‘고객’ 또는 ‘소비자’라는 용어도 1990년대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소비자는 이용자라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서비스의 구매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박충환, 오세조(1999)²⁶⁾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반 서비스부문에서의 고객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개념을 단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가치 사용자라는 개념에서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 전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관여자로서의 고객인 중간고객과 고객의 욕구충족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종업원까지도 고객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전적 정의]

1) 이용자(User)

- ① 국어사전 : 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사람.
- ② 영어사전 : user; (도서관 등의 방문자) visitor
- ③ 위키백과 사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여러 의미의 사용자.

[유사 의미]

1) 소비자(consumer)²⁷⁾

소비자기본법으로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 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26) 박충환 · 오세조, <마케팅관리>, 박영사, 1999, p.11

27)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15호, 2017.10.31. 일부개정]

말한다.

2) 사용자[employer, 使用者]²⁸⁾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655·756조 참조),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로,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또 다른 'User' 개념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예) 상반기 A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상반기 A사업 주민 의견 조사

2. 문제제기

'이용자'라는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를 경제적 행위의 주체로만 한정하는 위험이 있다.

3. 우리의 지향(답고자 하는 의미)

주민이 복지사업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잠재성과 본래성을 가진 주권적 주체라는 의미를 담는다.

4. 결과

복지관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활동, 이슈 등에 다양한 주체적, 주권적 존재로써 참여하는 의미를 담아 '주민(主民)'으로 대체한다.

28)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자 [employer, 使用者] (두산백과)

9. 저소득층·취약계층

1. 현재 활용

가) 빈곤 개념의 시대적 변화

전통적으로 빈곤은 주로 “소득이 결핍된 상태”였으나 산업혁명 이후의 빈곤은 “인간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회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UNDP, 1998)”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인 빈곤의 지표는 측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결핍이라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절대적 빈곤은 주로 “생존을 위협받는 정도의 물질적 결핍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타 계층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심각한 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빈곤선의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다(김동춘 외, 2000).

우리나라의 빈곤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빈곤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199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절대적 빈곤층보다는 상대적 빈곤층에 관심을 돌렸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에 다시 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로 생겨난 빈곤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현주 외, 2006).²⁹⁾

나) 취약계층의 정의³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29) 안희원, <저소득층·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7, p.17~18

30) 채윤경, <취약계층대상 아동복지종사자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6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황진구 외, 2011)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변종임 외, 2007; 조용남, 2013, 재인용). 가족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모자가정, 부자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가정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다) 취약계층의 법적 근거³¹⁾

취약계층의 정의는 여러 법률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김성천(2014)이, 우리나라 법률의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를 정리한 결과 소비자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도서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교육지원법 등의 법률에서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취약계층, 건강취약계층, 영약취약계층, 관광취약계층 등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 법률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 제 2조에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취약계층의 특징은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기준이며 특히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전

31) 김소영, <취약계층 대상 공적금융상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8~10

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급여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 2조에서 절대빈곤층인 수급권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저소득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본 결과 취약계층은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여러 종류의 다양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라) 저소득층의 정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저소득층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과 빈곤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심영(2012)은 저소득층은 경제적 능력이 결여된 계층으로 빈곤층과 혼용되거나 빈곤층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혹은 어떤 소득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김성숙(2011)도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빈곤상태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범위를 설정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김성숙(2010)은 빈곤선의 개념을 차용하여 OECD의 '상대적 빈곤'기준인 전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하였으며, 남상호(2011)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 차상위(near poor)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사전적 정의]

1. 취약계층

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

2. 저소득층

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일컫는다.

[사용의 예시]

→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 문제제기

경제학자 아마티아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에 의하면 빈곤은 표준적 기준이었던 단순히 낮은 수준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노력부족이 아니라 역량의 박탈로써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구분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역기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저소득층은 경제적 관점으로 위계화하여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무시한 채 집단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어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의 주인이다. '결핍'에 초점을 두어 보호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계층으로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역량에 초점을 둔 관점을 담는다.

4. 결과

주권적 주체로서 모든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민(主民)'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예) 취약계층 장학금지원 → 지역인재육성장학금사업

10. 주민조직화

1. 현재 활용

가) 지역사회조직화와 주민조직화

(1)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³²⁾

- ① 지역사회조직화의 개념적 뿌리는 미국에서 1970년대까지 활발하게 수행되었던 지역사회조직사업(community organization: C.O.)과 연결된다(최일섭·이현주, 2007: 27-34).
- ② 지역사회조직사업이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전문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일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지역사회조직화는 지역사회실천이며, 지역사회 실천을 위해 전개되는 모든 모형은 주민조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최옥채, 2001).
- ③ 지역사회조직화는 주민조직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 이찬희·문영주(2012)의 연구에서 지역조직화가 주민조직화,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실천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됨을 언급하였다.

(2) 주민조직화에 대한 이해³³⁾

- ① 주민조직화의 개념은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지역사회실천(community social practice)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류승일, 2004).
- ②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조직 운영과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지역문제의

32) 신재은 외 3명, <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화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6, p.12

33) 김이배 외 4명, <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매뉴얼 연구> 부산복지개발원, 2015, p.11-13

해결이다. 또한 다른 사회복지활동과 달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최옥채, 2005).

③ 주민조직화는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지역사회(communit)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구현해 나가는 실천과정을 의미한다(한국도시연구소, 2001. 안기억, 2007:8에서 재인용).

(3) 학자별 정의

① 홍현미라(1998) : 지역사회조직화란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하나의 '세력' 또는 '조직'으로 공유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실천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② 최종혁 · 이연(2001) : 주민조직화라는 개념을 지역사회조직화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조직화를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③ 서울시복지재단(2005) : 지역사회조직화를 '주민조직화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유도 · 지원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언급하였다.

④ 이찬희 · 문영주(2012) : 지역사회조직화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활동으로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력을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역조직화에 대한 의의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유되는 공동의 문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 관계를 형성 및 유지, 조직활동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2013).

⑤ 보건복지부(2015) : '201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에서는 주민조직화가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화를 주민조직화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유도 · 지원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하였다.

⑥ 최옥채(2001) : 지역조직화는 주민조직화,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실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사회의 욕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과정을 의미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실천가가 합당한 지역사회주민들로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이 화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나가는 지역사회실천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⑦ Mattessich and Monsey(1997) : 지역사회조직화가 자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불러 모으고 도구를 가진 그들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⑧ 한재량(2001) : 지역조직화는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주민조직화 과정을 통해 개별주민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조직화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조직형성을 통해 구조를 유지시키고 궁극적으로 조직화 과정을 통해 참여한 주민과 지역사회역할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⑨ 이마리아(2008) : 지역사회조직화를 지역사회실천가가 지역사회 내 문제를 이슈화하고 주민들을 불러 모아 조직한 주민들의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 지역 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실천의 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⑩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2010) : 미국의 사회운동가 Saul (David) Alinsky의 영향을 받은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에서는 주민조직화를 자신과 지역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주민의식을 갖는 것으로써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며 주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체계인 주민조직을 세우는 것을 언급하였다.

[사전적 정의]

1. 주민조직화

①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구현해 나가는 실천과정을 의미한다.

[유사 단어들과의 관계]

① 주민조직화, 지역사회조직화, 지역조직화 등의 개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3개의 개념이 주민들의 참여와 조직형성 및 활동, 그리고 역량강화 등 주민들의 활동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주민조직화로 개념을 통일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주민 조직화는 주민 스스로 조직화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주도성에 의해 주민을 조직해야할 대상으로 볼 위험과 주민의 자조직화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3. 우리의 지향(담고자 하는 의미)

수평적인 조직화기능 사업을 수행하고자 주권적 주민과 파트너(partner)로서의 의미를 담는다. 주권적 주민(主民)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연대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민조직화 사업의 지향점이다.

4. 결과

복지관 주도의 '주민조직화'를 주민과 파트너(partner)로서의 의미를 담아 '주민협력'으로 대체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지역조직화'도 '지역협력'으로 대체한다.

예) 상반기 주민조직화 사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 상반기 주민협력사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11. 중간관리자

1. 현재 활용

가) 시대적 정의

(1) 1940년대

① Niles(1949) : 중간관리자의 일반적 역할을 법령, 규칙, 정책 등의 범위 내에서 위양된 일상적, 규칙적, 특별정책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직업적, 기술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2) 1980년대

① J.H.Donnelly et al(1987) : 중간관리계층은 최고관리계층과 하급관리계층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최고관리계층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각의 소관 부문에서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그 부문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수행한다. 즉, 관리자들은 조직 및 과업을 관리하기위해서는 고전적 접근에 기초한 정보에 우선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태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리과학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② Henry Mintzberg(1989) : 중간관리자란 조직의 구조상 전략적 정점과 운영핵사이에 위치하는 직위를 점유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다.³⁴⁾

③ 박태량(1985) :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들은 슈퍼바이저의 역할로서 실무자들은 지지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능한 중간관리자는 이론적으로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기술적 미약함을 보완해주고, 관심과 이해를 보여줌으로써 신입직원에게는 전문가로서 모범

34) 전원보 <행정조직에서의 중간관리자의 역할>, 東義大學校 法政研究所, 1999,p.4~p.6

이 되며 타기관에서 온 경력직원에게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³⁵⁾

나) 성민 활용

제3조(직제)³⁶⁾

① 복지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 :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임명되며, 본 복지관의 대표자로 사업실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2. 부장 : 관장을 보좌하며, 복지관의 예산, 사업, 지원관리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3. 팀장(과장) : 부장을 보좌하며, 부서 내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부서특성에 따른 실무를 총괄한다.
4. 담당 :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강사와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복지관은 필요에 따라 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에 대리(주임) 등의 직급을 둘 수 있다.

[사전적 정의]

1. 중간관리자(中間管理者)(Middle manager)

① 최고 관리자와 현장감독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직능부문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는 관리자로 운영 및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사람.

35) 박태량, <사회복지관 중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구>, 東義大學校 法政研究所, 1985, p.5~p.7

36)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중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2. 관리자(manager)

- ① [국어사전]³⁷⁾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하는 자
- ② [영어사전] 관리인, 매니저, 감독, 경영자, 부장

[사용의 예]

→ 중간관리자 회의, 중간관리자 연수

2. 문제제기

‘관리자’는 위계적이고 직원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는 주권적 주체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우리의 지향(답고자 하는 의미)

주권적 주체인 직원을 관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직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는다.

4. 결과

현장 업무와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리더’로 대체한다.

예) 중간관리자의 핵심역량은 직원 관리입니다.

→ 중간리더의 핵심역량은 사람관계의 역량과 업무관리의 역량이다.

37) 위키피디아

12. 프로그램

1. 현재 활용

가) 프로그램의 정의

(1) 학자별 정의³⁸⁾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체계

<표-2> 프로그램의 학자별 정의

학자명	정의
Barker(1995)	해야할 일에 관한 계획과 지침
Rapp& Poertner(1992)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의 집합체
Patti(1983)	조직의 설립이념 또는 사명(mission)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기술이 주민 집단에 적용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계
Roysel와 동료 학자(2001)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화된 활동의 체계
Weingbach(2003)	자체적으로 다소간에 목적, 목표, 정책, 절차, 규칙 그리고 예산을 갖춘 조직의 한 구성요소

[사전적 정의]

1. 프로그램³⁹⁾

- ① 사회사업가가 속한 시설이나 기관의 원조목표를 달성하고 성

38) 황성철,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동체, 2005, p.17~18

39)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그램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원들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사업가가 활용하는 원조매체로 집단 활동의 계획 및 실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룹워크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회사업가와 성원 관계,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집단과정이 프로그램 활동 매체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되는 프로그램 행사는 성원들의 관심과 능력, 집단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성원들은 언어적(대화, 독서회 등), 비언어적(놀이, 수예 등) 활동으로 집단경험을 하게 된다. 사회사업가는 집단성원들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그 실천계획이나 평가에 성원들이 최대한의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원조해야 한다.

[사용의 예시]

→ 교육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지 등

2. 문제제기

프로그램은 모든 요소들을 일괄적인 구조로 규격화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며, 갑작스런 변수나 사회적 변화, 주민들의 변화되는 욕구 등이 바로 반영되지 못하고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업'으로 대체한다.

3. 우리의 지향(답고자 하는 의미)

복지관과 담당자의 기획 틀 속에서의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주민(主民)들의 실천 활동이라는 의미를 담는다.

4. 결과

사업은 주민이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전개가 가능한 사회복지 실천이다. 따라서 성민은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대체한다.

예) 자원봉사사업의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 자원봉사사업의 세부사업은 몇 개입니까?



부·록

1.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인권지침
2. 대한민국 헌법(제1장~제2장)
3. 세계인권선언문
4. UN 아동권리협약
5. 장애인인권선언
6. UN노인원칙
7. 사회복지사윤리강령

1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인권 지침

주민 및 직원 인권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칭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방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 교육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원 및 주민 인권지침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권리”란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권리를 말한다.
3. “주민”이란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자로서 인권보장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인된 자를 의미하는

주민(主民)을 일컫는다.

4. “존재의 몫”이란 “내가 본래적인 나로 존재하게 하는 몫”을 나타내며 내가 나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몫을 의미한다.
5. “복지사업”이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하며, 기존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대체어로 사용한다.
6. “인권침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4조 (실천원칙)

이 지침의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은 보편적 권리는 물론이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 국가와 복지관은 주민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사업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복지관은 주민의 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이 지침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본 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2장 주민 참여 및 권리보장

제5조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1. 복지관 및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주민이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복지관은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 및 타 복지관의 정보 외부유출 요청 시에는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하여 제공한다.
4. 복지관은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5. 복지관은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6.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소통함(주민고충처리함), 상담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주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사항에 대해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알린다. 이 때 직원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7. 주민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복지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1. 복지관은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복지사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주민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2. 정보에는 복지관 현황, 복지사업 제공의 목적, 복지사업 내용, 주민 권리,

고충처리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및 문서를 통해 제공한다.

제7조 (자기결정권)

1. 복지관은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복지사업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복지사업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선택,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
2. 주민은 복지사업 접수, 대기, 처리절차 등 복지사업 이용에 관한 제반 서류를 언제든지 공개 요청 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3. 복지관은 주민이 스스로 복지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신청서를 받아 기록으로 남긴다.
4. 주민이 복지사업에 참여를 거절할 때에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다른 기관을 안내·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주민 참여)

1.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주민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전에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3. 주민이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은 홈페이지, 건의함, 담당직원과의 상담, 관장과 의 대화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고충제안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5. 주민의 욕구, 불만, 복지관 발전을 위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며 주관 부서는 복지행정팀이 한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및 소리함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전화 : 02-876-0900 • 기관 홈페이지 : www.smw.or.kr • 소리함 비치장소 : 2층 입구
건의서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책임자가 일일 1회 정기적 수거 수거책임자 ⇒ 팀장 ⇒ 부장 ⇒ 관장
고충처리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처리회의를 통해 조치 • 기타 해당 팀 내 처리 가능사항 의견 제시 10일 이내에 조치보고서 제출
조치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후 15일 이내 조치결과 게시판 공유

6. 고충신청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례를 당할 때 고충 처리팀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알린다.

제9조 (참여 권리 보장)

1. 주민은 접수 상담, 복지사업 참여 계획,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복지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주민이 복지사업을 참여하는데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려를 한다.
3. 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주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자치활동보장)

1. 복지관은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 활동, 문화 활동, 자치회 등이 주민의

- 주도하에 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 주민 모임 또는 활동에서 대관을 요청할 경우 복지관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 대표는 필요 시 주민들의 의견을 복지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주민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제11조 (주민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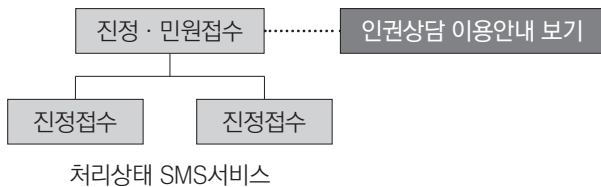
주민은 각 호 사항의 책임을 가진다.

1. 주민은 자기 자신이 주권적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기 물음을 할 책임을 진다. (주민은 어떤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든 내 존재의 몫을 깨물을 수 있어야 한다)
2. 주민은 다른 주민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 주민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인의 과실,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5. 복지관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주민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2조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

복지관은 주민 및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 인권침해시 주민이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2.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 국가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 보호복지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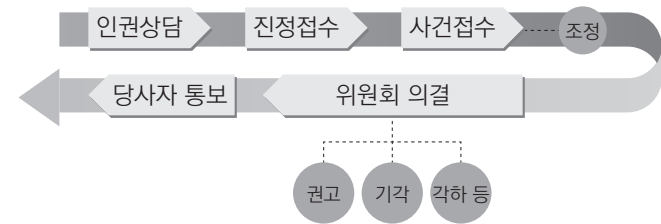
3. 민원으로 회신되는 경우

민원인이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 인가 등의 신청,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법령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 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사항이 다른 복지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 중 이에 해당 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우편·방문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팩스	02-2125-9811, 02-2125-9812
홈페이지	www.ha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5. 처리절차



6. 복지관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진정함을 비치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주민 차별 금지)

1. 복지관은 주민이 복지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2. 복지관은 주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14조 (주민 인권침해 방지)

1. 복지관은 주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복지관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복지관은 주민이 신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하며, 주민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민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고충처리회에서 조치사항을 논의하며 이용·종결, 복지관 출입금지 등에 대해 결정한다.
5. 직원이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주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조치한다.

제15조 (배상책임/면책범위)

복지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해소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비한다.
2. 복지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3.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4. 주민의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직원의 인권

제16조 (직원 존중)

1.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복지관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복지관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직원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제17조 (직원 채용과 계발)

1. 복지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8조 (공정한 대우)

1. 복지관은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9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1. 복지관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복지관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20조 (직무전환과 배치)

1. 복지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21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1. 복지관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2. 복지관은 복지관의 여러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3.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보호)

1.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2. 직원이 주민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지관은 주민의 복지관 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직원 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지관은 직원고 층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별첨〉 인권침해금지서약서

서 약 서

- 인권 침해 금지 서약서 -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이 가지 있는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비전과 「주민의 힘을 믿고 지지하며, 서로 배우고 어울리는 장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으로서 주(主)권자인 민(民)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고, 온전히 존재의 몫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서약내용〉

1. 본인은 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인권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이 근무 중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 결의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팀 :

성 명 : (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대한민국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40조 이하는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에 대한 조항이므로 생략함.

3

세계인권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채택)

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염원을 담아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국제 연합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은 국제 연합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보다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촉진하기로 결의하고,

회원국은 국제 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항상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 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단체가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한층 더 존중되도록 노력하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진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회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그 지배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구나 특정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지위나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관없이, 그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측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에게서는 법에 앞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인⁴⁰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에 앞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그러한 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싸우면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 재판소에서 공

40) 자연인 :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근대 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출처:네이버백과사전]

정한 공개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 ①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피보 증인이 보장된 공개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 ② 어느 누구도 행위를 했던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여부를 이유로 형사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 ①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지 떠났다가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 ① 모든 사람에게서는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하고 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이러한 권리는 정말로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국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 ① 성인 남녀에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시에 결혼에 관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② 결혼은 장차 배우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③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의 사회 집단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남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나 남과 공동으로 또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

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제21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③ 국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제23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타의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완되는 적절하고 알맞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②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③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우선권이 있다.

제27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산물이나 문학적 산물이나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 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이 오로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
- ②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 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
- ③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에 명시된 어떤 조항도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여기서 규정된 어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가담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UN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채택)

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음의 전제에 동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합의했다.

유엔현장의 원칙에 따라 세계 평화와 정의, 자유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데 달려있음을 고려한다.

유엔 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유엔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한편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사회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했음을 유념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천연의 환경이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확신한다.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 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한다.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 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한다.

아동권리선언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아동기를 마칠 때까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한다.

국내외 가정위탁과 입양 문제를 명시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유엔 최소 표준 규약(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 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함을 인정한다.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2조

- ①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아동이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현지관습에 의한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들이 아동의 능력과 발달 정도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7조

- 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제8조

- ① 당사국은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② 아동이 자신의 신분요소 중 일부나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해당 아동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 ①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②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④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결과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11조

-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불법으로 해외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

- ①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 ① 아동은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제14조

- ①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

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 ①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②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 ①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 ②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기능을 인정해 아동이 특히 자신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아동에게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나. 문화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류·보급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다. 아동도서 제작과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 라.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이 겪는 언어상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해 아동복지에 유해한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8조

- ①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 양 쪽 부모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공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무엇이 최상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②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과 시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 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을 박탈당했거나 아동에게 이롭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방안을 확립해

야 한다.

-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 양육, 회교법의 카팔라(Kafalah, 빈곤아동, 고아 등을 위한 회교국의 위탁 양육방법),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까지를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해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 나.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다. 해외 입양아가 국내 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라. 해외입양의 경우 양육 지정이 입양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 ① 당사국은 난민의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법이나 국내법, 다

른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규정된 아동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자격 있는 정부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난민아동의 부모나 가족 추적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 ① 당사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아가 인격을 존중 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장려되는 여건에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장애아의 권리를 인정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과 부모, 다른 아동 양육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이 신청에 의해 해당 아동과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③ 장애아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부모 등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해 가능한 한 무상 지원을 해야 하며, 아동이 교육과 훈련, 의료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안을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등 개인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아를 위한 재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 보급과 이용을 비롯해 예방의학분야,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룸

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4조

- ①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영아와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 다.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안전한 식수 보급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부모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장점,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에 관한 기초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 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부모교육, 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조치
- ③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 아동은 치료 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 책임자의 재산과 상황을 고려하는 물론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행하는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 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②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③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④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재정적 책임자가 아동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협약 가입이나 체결 등 적절한 조치를 세우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28조

- ①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관련 정보와 지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지식 및 현대적인 교육체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문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제29조

- ①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 ②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 기준

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

제31조

- ①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제32조

- ① 당사국은 경제적인 착취를 비롯해 위협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②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규정들을 확립해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 연령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고용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춘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

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연령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②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을 삼가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는 경우 최 연장자부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무력분쟁 하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고문,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해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0조

- ①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맡게 될 건설적 역할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② 이 목적을 위해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해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않는다.
 - 나.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에 대한 변론 준비와 제출에 있어 직접, 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법률적 지원 및 다른 적절한 지원 하에 법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통해 지체 없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 없는 한 특별히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 부모나 후견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심문하거나 심문 받는 것과 대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대변할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5)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결 및 그에 따른 모든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

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 가.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충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루는 조치
- ④ 아동복지 측면에서 적절하고,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위법행위에 맞는 처우를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 직업훈련 계획, 기타 대체방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아동권리 실현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제43조

- ①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관해 당사국이 달성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 ② 위원회는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명망 높고 능력을 인정받는 10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균형 있는 지역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해 당사국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 1인을 위원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2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하라는 서한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그 후 사무총장은 후보를 지명한 당사국 표시와 함께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⑤ 선거는 유엔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고, 회의에 출석해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의 최대 다수 표 및 절대 다수 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된다.
- ⑦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특정 이유로 인해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 ⑧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한다.
- ⑨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 ⑩ 위원회 회의는 통상적으로 유엔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된다.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고 검토된다.
- ⑪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⑫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

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 ①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 실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보장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전 상황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당사국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 ②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 단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③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 ④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
- ⑥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시민사회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 가. 전문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 이행과 관련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가,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해 각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

에 있어 협약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다른 유엔기구들에게 그들의 활동분야에 한해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이 기술적 자문 지원 요청, 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해당보고서를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그 외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특정문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을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해 접수한 정보에 기초해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며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9조

- ①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②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 해당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 ①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이를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 후원으로 동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안은 동 회의에 출석해 표결한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되며 승인 절차를 위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 ②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고, 당사국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발효된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다른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협약의 규정 및 당사국이 받아들인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만 구속된다.

제51조

- ① 유엔 사무총장은 비준이나 가입 시 각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의 문서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배포해야 한다.
- ② 이 협약의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유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유보 조항 철회 통지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52조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다. 실효는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보관하는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정보으로 동등하게 만들어진 이 협약의 원본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했다.

5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礙人 權利 憲章)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 ①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③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⑤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⑥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 ⑦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 ⑧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 ⑨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 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안 된다.
- ⑩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⑪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⑫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⑬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6

노인을 위한 UN원칙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I. 독립(Independence)

-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II. 참여(Participation)

-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돌봄(Care)

- ①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②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IV.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①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V. 존엄성(Dignity)

-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연령,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

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 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⑦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① 사회복지사는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 ②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 ①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II. 사회복지사의 주민에 대한 윤리기준

1. 주민과의 관계

- ①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 ② 사회복지사는 주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⑤ 사회복지사는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⑥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주민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⑦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민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⑧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 참여 주민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민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주민과의 관계

- ①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주민

과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②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주민을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III.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 ①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 ①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 ④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IV.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①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 ②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V.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①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②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VI.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성민복지용어사전

발 행 인 | 석기성

공동저자 | 광효정, 이현정, 고수은, 김정윤, 김민희 | 양세진

편 집 인 | 이현정, 김민희

발 행 일 | 2018년 4월 17일

발 행 처 | 사회복지법인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549(신림동 300-1)

연 락 처 | TEL. 02-876-0900 FAX. 02-876-0901

홈페이지 | <http://www.smw.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ungmin0900